


방사능 오염 선박평형수 유입 차단 조치 안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23.8.24.)에 따라 방사능 오염 선박평형수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시행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본 동부 6개현* 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입항 예정인 선박

*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조치사항** 국내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 제출

* 평형수 주입·교환·배출 등 평형수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


 평형수입항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평형수관리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따라 항해정지(출항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선박


 **조치사항**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 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

* 쓰가루해협 등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시 쓰가루해협 통과 후 부터 동경 135도30분 사이 또는 간몬해협 등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시 북위 34도35분 통과 후 부터 동경 132도30분 사이에서 교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승선하여 교환 여부를 확인하고, 평형수 시료를 채취하여 신속하게 방사능 농도를 측정할 예정이며, 평형수 배출은 방사능 오염 조사 후 가능

3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

 **조치사항**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제출서류/방법)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 등의 입증 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출항 전까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배출 여부를 확인 (필요시 승선조사)할 예정이며, 선박의 출항은 배출 여부 확인 후 가능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조사 등 절차

